



「2023년 4분기」

재난안전관리실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

2024. 2. 26.(월)

재난안전관리실

‘부당이득금 반환소송’ 예비비 사용 내역 보고

’24. 02. 02.(금) | 도로계획과장 : 오대중 ☎2133-8060 팀장 : 최영무 ☎8091 담당 : 배현경 ☎8094

「서울특별시 결산서 등의 제출 및 예비비 제출 승인에 관한 조례」 제3조(예비비 지출 보고 및 승인) 제3항에 따라 23년 4분기 예비비 사용내역을 보고드립니다

□ 예비비 사용내역 : 1건, 6,899백만원

○ ‘부당이득금 청구소송’ 판결에 따른 부당이득금 6,899백만원 집행

【 소송 개요 】

- ◆ 사 건 명 :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가합40111 부당이득금
- ◆ 당 사 자 : (원고) 서울주택도시공사
(피고) 서울특별시
- ◆ 사건토지 : 송파구 장지동 245-15(도로, 4,775㎡), 649-11(도로, 23㎡)
- ◆ 청구원인 : 서울시가 법률상 근거없이 사건토지를 무상귀속 받았다고 부당이득 반환 소송을 제기
- ◆ 판결결과 : 화해권고결정
- ◆ 판결사유 : 이 사건 사업은 국토계획법 제65조의 무상귀속이 적용되는 ‘단지형 개발사업’에 해당하지 않는바, 우리시가 아무런 법률상 원인 없이 무상으로 사건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봄.

○ 소송 판결 주요 내용

- 원고는 ‘장지교 삼거리 입체화 시설공사’ 완료 후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65조 제1항에 의거 송파구 장지동 245-15(도로, 4,775㎡), 장지동 649-11(도로, 23㎡)를 우리시로 ‘21년 무상귀속시킴.
- 그러나 대법원 판결(2019. 8. 30. 선고 2016다252478)에 따르면 이 사건 사업은 「국토계획법」 제65조의 무상귀속이 적용되는 ‘단지형 개발사업’에 해당하지 않는 바 우리시로 무상귀속하였던 토지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하였고, 원고에게 토지 매수 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하라는 화해권고 결정이 내려짐.

○ 화해권고 결정 수용 사유

- 대법원 판례를 본 사건에 적용하면 법원의 화해권고 결정에 이의를 제기 하여도 승소 가능성이 매우 희박 (소송대리인 자문의견)
- 원고에게 토지 매수 원금만 지급하는 것으로 화해권고되어 이자비용 ('21.2.26.~판결금 지급시)과 소송비용 만큼의 예산을 절감 가능.

○ 사건 확정 이후 판결금 지급 지연에 대한 연 12%의 이자 부담을 감하고자 6,899백만원을 예비비로 지급함.

(단위: 원)

부서	세부사업명	통계목	지출액	지출일
계			6,898,570,000	
도로계획과	무상양도 부당이득금 반환소송	배상금 등 (305)	6,898,570,000	'23.10.31.

‘한강대교 보수공사’ 예비비 사용 내역 보고

'24. 02. 02.(금) | 교량안전과장: 김동철☎2133-1940 교량관리팀장: 민형일☎1950 담당: 김태현☎1958

「서울특별시 결산서 등의 제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」 제3조(예비비 지출 보고 및 승인) 제3항에 따라 '23년 4분기 예비비 사용내역을 보고드립니다

□ 예비비 사용내역 : 1건, 358백만원

※ 기획조정실에 편성된 예비비를 재배정 받아 집행함

○ 손해배상 청구의 소 : 판결금 및 이자 358백만원

【 소송 개요 】

- ◆ 사 건 명 :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가합568865 손해배상 청구의 소
- ◆ 당 사 자 : (원고) 남양건설 외 1
(피고) 서울특별시
- ◆ 소송물가액 : 1,629백만원
- ◆ 사건개요 : 우리시 발주공사 ‘한강대교 남단 보행교(백년다리) 조성공사’ 관련하여 원고들의 책임없는 사유로 공사중지 및 타절준공으로 인한 손해배상금 및 지연배상금에 대한 청구소송
- ◆ 판결결과 : 원고 청구 일부인용(판결금액 332백만원, 우리시 79.6% 승소)
- ◆ 판결사유 : 공사중지 및 타절준공이 원고들의 귀책사유로 보기는 어려우나, 청구금액에서 기성금, 기지급 받은 투입비용 등을 고려하여 일부감액

○ 소송 판결 주요 내용

【계약해지 적법여부】

- 공사체결 당시 예견할 수 없었던 공사의 문제점이 발견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서울시의 책임있는 사유에 계약해지가 이루어진 것으로 봄이 타당함

【손해배상금】

- 서울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시공사에게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고 기업이윤 전액이 원고들에게 보장된 이익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우나 별다른 증거가 없는 이상 이행이익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참고자료로서 가치를 가짐

- 장기계속계약중 연차별 계약인 1차 계약을 통하여 이윤부분이 구체적으로 확정되며, 1차 계약의 이윤 중 1회 기성금을 공제한 금액의 70%를 손해배상액으로 산정하고 기지급 받은 투입비용을 공제하여 손해배상금 결정

【지연배상금】

- 공사완료여부에 관계없이 서울시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60일을 초과하는 공사정지기간에 대하여 지연배상금 적용
- 서울시가 공사정지로 인한 추가 투입비용을 이미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지연배상금은 별도로 청구할 수 있음
- 1차 공사 계약금액에서 1회 기성금을 제외하고 초과일수 매 1일마다 일반자금 대출금리를 곱하여 지연배상금을 산출한 후 기성율(0.74%) 등을 고려하여 70%로 감액하여 지연배상금 산정

○ 항소 포기사유

- (법률지원담당관 결정)
 - 공사계약이 우리시 책임으로 해제된 것으로 보았으나, 우리시 공사정지 통보로 이 사건 공사는 실질적으로 착공하기 전에 정지되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손해배상액의 70%만을 인정하였고,
 - 지연배상금의 경우에도 원고가 주장한 기간의 2/3가량만 인정되는 것으로 판단하면서도 역시 배상액의 70%만을 인정하였고, 피고가 이미 지급한 금액을 공제하였음
 - 공사가 우리시의 책임으로 해제되었다는 판단에도 불구하고 원고들이 청구한 금액에 비하여 인용된 금액이 약 20.4%에 불과하고,
 - 항소심에서 새롭게 제출할 증거가 없으며, 쌍방 항소하여 항소심이 진행되는 경우에는 손해배상액이 인정비율이 70%보다 높아질 가능성과 이자가산으로 지급액이 가중될 수 있다는 점까지 고려하며 우리시가 먼저 항소할 실익은 낮다고 판단하여 항소 포기 결정
- (소송대리인(변호사) 의견) 항소 실익 없음
- (부서 검토 의견) 항소 실익 없음

- 따라서, 우리 시는 항소를 포기하고 판결금을 지급하여 사건을 종결하는 결정을 내림 (항소포기 방침, 법률지원담당관-19609호, 2023.12.15.)
- 사건 확정 및 원고의 판결금 청구에 따라 이자로 인한 재정 손실을 막기 위해 예비비 지출 승인을 받아 신속하게 지급함

(단위: 원)

부 서	세부사업명	통계목	지출액	지출일
계			357,969,354	
교량안전과	한강대교 보수공사	배상금 등 (305)	357,969,354	'23.12.29.

※ 청구금액 세부내역

원 고		계	판결금	이자			비 고
				계	23.11.28까지 (연6%)	23.11.29부터 (연12%)	
계		357,969,354	332,206,937	25,762,417	22,385,890	3,376,527	
남 양 건 설	소 계	182,564,371	169,425,538	13,138,833	11,416,804	1,722,029	
	손해배상	106,243,686	98,239,577	8,004,109	7,005,609	998,500	22.09.21.부터
	지연배상	76,320,685	71,185,961	5,134,724	4,411,195	723,529	22.11.17.부터
청 미 건 설	소 계	175,404,983	162,781,399	12,623,584	10,969,086	1,654,498	
	손해배상	102,077,267	94,387,045	7,690,222	6,730,879	959,343	22.09.21.부터
	지연배상	73,327,716	68,394,354	4,933,362	4,238,207	695,155	22.11.17.부터